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7급 상이자 보상금 수급권의 유족 승계 〉

■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2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7급 상이자 보상금 수급권의 유족 승계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6. 19.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Ⅲ. 검토의견: 7급 상이자 보상금 수급권의 유족 승계

-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상금)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에 해당하는 <u>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u>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 <u>사람이</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이하 “전상군경등”이라 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¹⁾ 전

1) 「국가유공자법」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

상군경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이라면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은 전상군경등의 사망 시 보상금이 승계되는 상이등급을 6급 이상으로 규정²⁾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³⁾을 받은 전상군경등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개정안은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전상군경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상군경등은 직무수행, 국가사회발전 공로 관련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상이 등급을 불문하고 7급의 전상군경등 유족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보훈보상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⁴⁾ 보훈보상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과 전체 보훈보상의 체계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상이등급 7급과 상이등급 6급, 특히 6급 3항과의 상이 정도의 차이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등의 유족에 대하여 그 보상금 지급을 전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하여, 국가보훈적 예우 범위는 국민감정 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⁵⁾ 상이등급 7급과 6급의 차이가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등의 유족을 보상 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상이등급 7급 유족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7급의 경우 6급에 비해 상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등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⁶⁾에 반한다는 입장임.

4) 「국가유공자법」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도 국가보훈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감정 또한 고려의 한 요소로 보고 있음 (93헌가14 결정, 99헌바32 결정, 2006헌마87 결정 등 참조).

6) 국가보훈부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심각한 상이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임.

< 상이등급 6급 3항과 7급 구분에 따른 상이 정도 비교 >

상이 부위	상이등급 6급 3항	상이등급 7급
귀,코 및 입	·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0개 이상 치아 상실로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개 이상 치아 상실로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흉복부장기 등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정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팔 및 손가락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다리 및 발가락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 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상이등급 구분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중 상이등급 6급 3항과 7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정도를 재구성함

< 2024년 전상군경등의 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 구분표 >

(단위: 천원)

상이등급별	본인 보상금	유족 보상금		
		배우자	부모	자녀
1급 1항	3,681	1,681	1,654	1,952
1급 2항	3,471			
1급 3항	3,323			
2급	2,955			
3급	2,762			
4급	2,317			
5급	1,919			
6급 1항	1,751	617	585	890
6급 2항	1,612			
6급 3항	1,083			
7급	608	-	-	-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현재 상이등급 7급이었던 자의 미망인은 15,759명으로,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예상되므로,⁷⁾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상이등급 7급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소요예산 >

(단위: 명,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미망인 사망인원	1,276	1,268	1,262	1,258	1,256
미망인 발생인원	1,172	1,193	1,213	1,235	1,257
미망인 누적인원	15,655	15,580	15,531	15,508	15,509
단가	608	608	608	608	608
소요예산	114,219	113,672	113,314	113,146	113,154

자료: 국가보훈부

7)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본인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경우 연 평균 1,135억원(5년간 5,67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족 보상금은 본인 보상금 보다 작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소요예산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됨.

○ 셋째, 「보훈보상자법」 또한 상이등급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고,⁸⁾ 「국가유공자법」과 동일한 체계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보훈보상 체계 내에서 「보훈보상자법」 등 다른 보훈 대상과의 형평성 및 체계적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비추어 7급의 상이 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과 다른 보훈대상자의 승계 요구에 따른 추가적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8) 「보훈보상자법」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